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50
------	------

2014. 2. 25.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년 11월 13일

나. 제안자 : 박양숙 의원(찬성자 17명)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2014년 2월 25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재정투·융자심사, 민간투자사업심의 등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5월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으로 설치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 강화와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독립적 운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및 기능,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센터의 장은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토록 하고, 시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보고서를 2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이를 검증토록 하고, 기존 공공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제정안의 개요

- 서울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예방 등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 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법적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배경

- 서울시는 그 동안 재정 투·융자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면서 사업부서에서 용역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실시함에 따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이 비합리적으로 높게 산정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 일례로, ‘11년 투자심사대상사업 151건 중 150건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¹⁾인 B/C 1.0 이상(평균 B/C 3.07)으로 나

1) 정책결정 또는 기획과정에서 대안(代案)을 분석·평가할 때 흔히 사용되는 분석기법. 비용편익분석은 몇 개의 대안(alternatives)이 저마다 제시한 프로젝트[세부 사업계획]에 의하여 생겨나는 편익(便

타났으며 이러한 형식적·관용적 심사로 인해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

- 또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서울시의 재정여건, 요금체계의 실현가능성, 협약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전문심사역량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서울시는 투자심사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를 서울연구원 원장 직속으로 설치하여, 총 17명(3팀)의 인력으로 운영해오고 있음.

▷ 조 직 : 3팀(기획팀, 조사1팀, 조사2팀)

▷ 인 원 : 총 17명(소장1명, 박사3명, 석사 12명, 운영지원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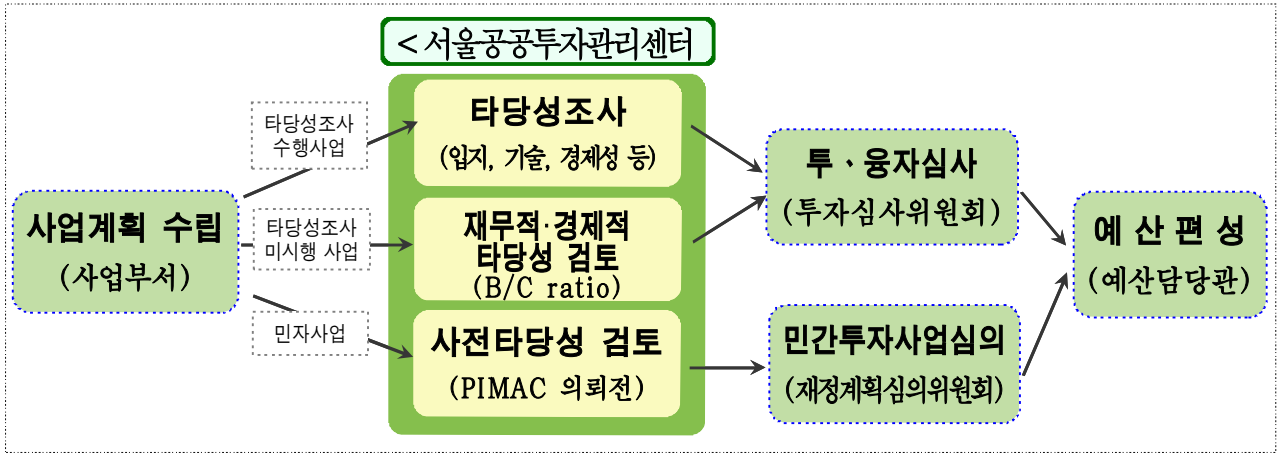
▷ 기 능

- 타당성조사 일원화를 통한 사전 검증절차의 신뢰성 제고
- 재무적·경제적 타당성분석 강화를 통한 투자심사의 전문성 향상
- 민간투자사업의 단계별 검토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사업 내실화

- 동 센터는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실시협약안의 사전검증 등의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益)과 비용(費用)에 대하여 각각 측정하고, 그 편익의 크기[금액]와 비용의 크기[금액]를 비교 평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 파악되는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활용됨.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업무절차 >



- 이에 따라 센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재정사업분야에 총 158건,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8건, 연구·교육분야 6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투자심사의뢰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검토 >

(단위 : 건, 2013. 10월 말 기준)

업 무	2013년			2012년	누적 합계	비 고	
	완료	진행	소계				
재정사업 분야	타당성검토	84	-	84	59	143	경제성 분석(B/C)
	타당성조사	4	5	9	2	11	-
	타당성검증	3	-	3	1	4	외부기관 타당성 조사사업
민간투자사업 업무지원	6	-	6	2	8	적격성조사 포함	
연구·교육분야	3	-	3	3	6	분야별 경제성검토 가이드라인	

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 센터는 투자심사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평가

시스템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서울시 사업 부서 중 일부는 센터를 공공투자 사업의 평가기관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기관으로 인식하기도 함.

- 또한, 업무추진 시 과업범위에 대한 마찰이 발생되거나 사업부서의 의지로 센터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등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규직 정원의 단계적 확대는 물론, 전문적·독립적 평가기관으로 설립된 센터의 법적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서울시 사업부서와의 불필요한 이견을 최소화하고, 센터가 독립적인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서울시가 센터 설치에 관하여 법제처에 법률검토를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은 “서울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이므로, 동 제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라. 분야별 세부검토

1) 시장의 책무 등(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제정안은 서울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와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적이고 독립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투자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시장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2) 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안 제4조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를 '서울연구원' 부설로 두어 설치근거와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지위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투·융자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센터를 '서울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독립적 평가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보임. 이는 중앙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CMAC)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3) 센터의 조직(안 제5조)

- 안 제5조는 센터의 소장을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서울연구원장이 임명토록 하며, 예산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보고서를 2월말까지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센터의 존립은 투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 여부에 달려있고, 대형 공공사업의 과다 수요예측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센터의 대표와 연구원의 독립성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연구원장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 하에서는 서울시 집행기관에 대한 구조적 종속성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평가기구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서울특별시의 회의 산하 기관으로 이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4) 타당성조사 결과 등 검증(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 제정안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이를 검증토록 하고, 기존의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센터 소속 연구원의 평가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해석됨.

그러나 타당성 검증이 임의규정이라고는 하지만, 모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적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공성이 높고 시민복지향상 등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증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도록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 사업 관리 중심 체계로 조례안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매년 전년도 운영 실적 보고서를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근거와 조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50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5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 사업 관리 중심 체계로 조례안을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관련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공공투자사업의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함.
- 나.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매년 전년도 운영 실적 보고서를 2월말에서 3월말까지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 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근거와 조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함(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회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u>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1. “타당성조사”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u> 2.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u> 2. “타당성조사”란 <u>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u>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u>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전문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u> ② 시장은 <u>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u>

제 정 안	수 정 안
<p>③ 시장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 결과가 시의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4조(설치 및 운영)</u>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u>서울연구원 부설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u></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 ></p>	<p><u>제4조(업무)</u>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u>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 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5조(센터의 조직 등)</u> ① 센터의 장은 서울연구원의 장이 공공투자관리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시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2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삭 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④ 센터의 장은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p> <p>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업무 처리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p>	<p>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투자사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2. “타당성조사”란 시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시행하는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또는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재정 투·융자 심사”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4. “민간투자사업”이란 시에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독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타당성조사

2. 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의 사전 검토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4. 타당성조사 및 검토 등과 관련된 연구·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3월 말까지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 ① 센터의 장은 센터의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센터에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